

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내용

이 내용은 2003년 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내용이다(편집자註).

I. 개정이유

- 상법,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내용을 표준정관 중 해당 규정에 반영·보완하고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체계를 조정·보완하기 위함.

II. 주요골자

1.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신주인수권 부여 관련 규정 개선(제10조, 제10조의2)

- 신주의 제3자 배정에 관하여 제10조와 제10조의2에서 각각 규정함에 따라 이용자들이 제10조의2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신주인수권 부여를 위한 근거조문으로 제10조만 있으면 충분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10조의2를 삭제하는 대신 발행한도 등 주주의 신주인수권 제한내용을 제10조에서 흡수·통합하여 일괄적으로 규정함.
- 주주우선공모방식의 경우 관행상 주주에게 주주지분비율에 따른 청약권을 부여하고 또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주주배정후 실권주공모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이를 주주배정의 방법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외는 다른 형태, 즉 주주의 지분비율과 다르게 청약의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관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아울러 공모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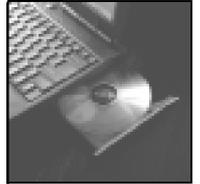
주간사 증권회사와 총액인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가 발행하는 모든 신주는 1차적으로 주간사 증권회사에서 인수하게 됨에 따라 특정인에 주식이 배정되는 형태를 취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

2. 주식매수선택권제도의 개선(제10조의3)

- 바람직한 스톡옵션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성과연동형 스톡옵션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2001년 표준정관 개정 당시 회원사의 활용을 위해 주식사향으로서 이사회결의에 의해 부여할 수 있는 스톡옵션 수량에 대하여 확정되지 않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한 관계로 현행 시행령(제84조의6 제6항)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시행령에 맞게 수정함.
- 개정(2001.12)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제1항에 의하면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관계회사(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 제1항)의 임직원에 대하여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함.

3. 전환사채(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가격(또는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조정 관련내용 주식 신설(제14조, 제15조)

- 개정(2002.8)된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 관한규정(제61조의2)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격 조정시 발



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아래의 두가지 경우에 예외적으로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00분의 70 미만으로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주식으로 그 근거조항을 예시함.

- i) 정관의 규정으로 조정후 전환가액의 최저 한도(이하 “최저조정가액”이라 함)와 최저 조정가액을 적용하여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발행사유 및 금액을 정한 경우
- ii) 정관의 규정으로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당해 전환사채 발행시 주주총회에서 최저조정가액 및 당해 사채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시가하락에 의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 조정시 전환사채의 경우를 준용하고 있음(유가증권의 발행 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3조). 이에 따라 주식으로 그 근거조항을 예시함.

4. 주주총회 소집통지 방법으로서 전자문서를 추가(제19조)

- 개정(2001.7)된 상법에서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방법으로 서면통지에 추가하여 전자문

서에 의한 통지를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조항을 추가함(상법 제363조 제1항).

5.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의한 사외이사 후보추천 근거 신설(제30조의2)

-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회사로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 제3항 및 제54조의5 제2항)되어 있거나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에도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사외이사 후보 추천절차 등 후보추천에 관한 근거 조문을 신설함으로써 참고할 수 있도록 함.

6. 집행임원에 관한 근거 신설(제34조의2)

- 현재 등기는 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상의 이사로 운영되고 있는 집행임원제도를 정관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문을 신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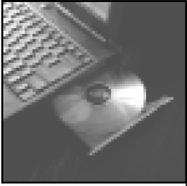
7. 이사의 보고의무에 이사회에 대한 정기보고의무를 추가(제34조의3)

- 2001년 개정된 상법에서 이사로 하여금 업무집행상황을 이사회에 3월에 1회 이상 보고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함(상법 제393조 제4항).

Ⅲ. 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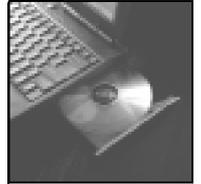
| 현 행 | 개 정 | 개정이유 및 참고사항 |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의 <u>자에게</u>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제10조(신주인수권) ①(현행과 동일)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의 <u>자에게</u> <u>사회 결의로 신주</u> 를 배정할 수 있다. | - 신주의 제3자 배정에 관해 제10조와 제10조의2에서 각각 규정함에 따라 이용자들이 제10조의2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제3자배정을 위한근거조문으로 제10조만 있으면 충분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음. 이에 이용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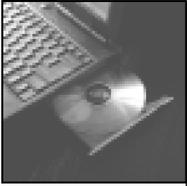
상장자료실



| 현행 | 개정 | 개정이유 및 참고사항 |
|--|--|--|
| <p>1. (삭제 2000.2.10)</p> <p>2. 증권거래법 제18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3.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p> <p>4.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5. 증권거래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에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 본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은 제3자배정의 하나의 예를 제시한 것으로서 회사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밖에도 아래 예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목적과 대상을 특정하여야 함. 이와 함께 제10조의2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발행한도와 발행가격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여야함</p> | <p>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 (또는 액면총액이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p> <p>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 (또는 액면총액이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권거래법.....</p> <p>3. (현행과 동일)</p> <p>4. (현행과 동일)</p> <p>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또는 액면총액이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권거래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에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또는 액면총액이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 회사가 제3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배정·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항에서 예시한 것과 같이 그 목적과 대상 및 한도를 정하는 것은 물론 발행 당시 신주발행의 필요성과 함께 적합성,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유의하여야 함. <목적 및 대상례> 1.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p> | <p>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10조의2를 삭제하는 대신 그 내용을 제10조에서 흡수하여 통합, 일괄적으로 규정하였음.</p> <p>- 주주에게 우선청약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주주등이 청약하지 아니한 주식을 다시 모집하는 「주주우선공모방식」의 경우 관행상 주주에게 주주지분비율에 따른 청약권을 부여하고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주주배정 후 실권주공모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이를 주주배정의 방법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는 다른 형태, 즉 주주의 지분비율과 다르게 청약의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관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아울러 공모의 경우 주간사 증권회사와 총액인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가 발행하는 모든 신주는 1차적으로 주간사 증권회사에서 인수하게 됨에 따라 특정인에 주식이 배정되는 형태를 취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p> <p>- 각 사유별 발행한도 및 이사회결의로 주식의 종류와 발행가격을 정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추가함.</p> |

| 현 행 | 개 정 | 개정이유 및 참고사항 |
|--|--|--|
| <p>예) 1.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2.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후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 신규로 주권을 상장하거나 협회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권을 신규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주주의 신주인수권 배제근거를 신설하여야 함.</p> <p><u>< 항 신 설 ></u></p> <p><u>< 주식신설 ></u></p> <p>③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p> <p>제10조의2(일반공모증자등) ①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또는 액면총액이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권거래법 제189조의3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방식에 의한</p> | <p><u>주를 발행하는 경우</u></p> <p>2.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후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 신규로 주권을 상장하거나 협회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또는 액면총액이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신규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주주의 신주인수권 배제근거를 신설하여야 함.</p> <p>③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p> <p>※ 발행가격은 관련 법조문에 따라 이사회 결의시 정하도록 함(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5,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p> <p>④ (현행과 동일)</p> <p>제10조의2 <u>< 삭 제 ></u></p> | <p>개정이유 및 참고사항</p> <p>- 공모 또는 제3자배정방식 증자의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에 대한 결정권한은 이사회에 있음을 명기함.</p> <p>-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통합함에 따른 삭제</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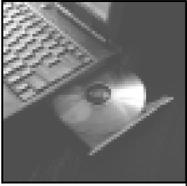




| 현행 | 개정 | 개정이유 및 참고사항 |
|--|---|-------------|
| <p>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p> <p>②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또는 액면총액이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권거래법 제192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할 수 있다.</p> <p>③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또는 액면총액이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p> <p>※ 회사가 제3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배정·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조 제2항 제6호 주식에서 예시한 것과 같이 그 목적과 대상을 정하는 것은 물론 발행 당시 신주발행의 필요성과 함께 적합성,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유의하여야 함.</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5의 규정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p> <p>제10조의3(주식매수선택권) ①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의 범위 내에서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p> | <p>제10조의3(주식매수선택권) ①---</p> <p>.....</p> <p>.....</p> <p>.....</p> <p>.....</p> <p>.....</p> <p>.....</p> <p>.....</p> <p>.....</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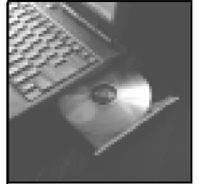
| 현 행 | 개 정 | 개정이유 및 참고사항 |
|--|--|--|
| <p>할 수 있다. < 단 서 신 설 ></p> <p>※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할 수 있는 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이며(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 제5항), 이사회결의로 부여할 수 있는 한도는 <u>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최근사업년도말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임(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 제6항).</u></p> <p>※ 벤처기업이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주권상 장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도가 적용되며 이미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기한까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6항,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 10).</p> <p>②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u>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u>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 <p>.....: <u>이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u></p> <p>※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할 수 있는 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이며(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 제5항), 이사회결의로 부여할 수 있는 한도는 <u>최근 사업년도말 자본금을 기준으로 i) 3천억원 이상인 법인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ii) 1천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인 법인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수와 60만주(액면가 5천원기준) 중 적은 수에 해당하는 주식수, iii) 1천억원 미만인 법인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임(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 제6항).</u></p> <p>※ (현행과 동일)</p> <p>②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u>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6 제1항에서</u></p> | <p>- 성과연동형 스톡옵션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p> <p>-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6 제6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규정함.</p> <p>- 개정(2001.12)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관계회사(증권거래법</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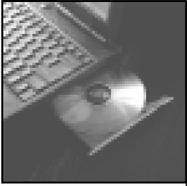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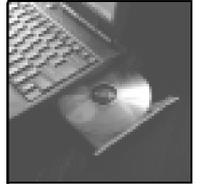
| 현행 | 개정 | 개정이유 및 참고사항 |
|--|--|--|
| <p>1. 최대주주(증권거래법 제54조의 5 제4항 제2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p> <p>2. 주요주주(증권거래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p> <p>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u><주석 신설></u></p> | <p><u>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으로 하</u>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p>1. 최대주주(증권거래법 제54조의 5 제4항 제2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u>임원(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 제1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u>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p> <p>2. 주요주주(증권거래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u>임원(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 제1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u>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p> <p>3. (현행과 동일) ※ 제2항 본문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 제1항에서 정하는 <u>관계회사란</u> i) 당해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ii) i)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과 그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iii) 당</p> | <p>시행령 제84조의6 제1항)의 임직원에 대하여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을 반영함.</p> <p>- 관련 법률내용을 주석으로 설명함.</p> |

| 현 행 | 개 정 | 개정이유 및 참고사항 |
|---|--|---|
| <p>③~⑨ (생략) 제14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 ⑤ (생략) 〈주석 신설〉</p> | <p>③~⑨ (현행과 동일) 제14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 ⑤ (현행과 동일) ※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시 이사회 결의로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정관에 추가하여 규정하여야 함(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61조의2). 1) 정관 규정만으로 가능하게 하는 경우 예)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 총액이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항 제○호의 사유로 인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원으로 할 수 있다. 2) 정관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위임하는 경우</p> | <p>개정이유 및 참고사항</p> <p>-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61조의2)에서는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시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 내용을 주석으로 규정함.</p> <p>i) 조정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이하 “최저조정가액”이라 함)와 최저조정가액을 적용하여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발행사유 및 금액</p> <p>ii)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당해 전환사채 발행시 주주총회에서 최저조정가액 및 당해 사채의 금액</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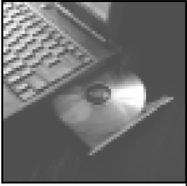


| 현행 | 개정 | 개정이유 및 참고사항 |
|---|--|---|
| <p>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 ⑤ (생략) <u><주석 신설></u></p> | <p>예) 회사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전환사채 부여시의 전환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p> <p>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⑤ (현행과 동일) ※ 시가하락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격 조정시 이사회 결의로 발행당시의 행사가액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정관에 추가하여 규정하여야 함(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63조). 1) 정관 규정만으로 가능하게 하는 경우 예)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 총액이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항 제○호의 사유로 인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한도를 ○○원으로 할 수 있다. 2) 정관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위임하는 경우 예) 회사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한도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p> | <p>-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63조)의 내용을 반영함. 개정이유와 참고사항은 전환사채 부분과 동일함.</p> |



| 현 행 | 개 정 | 개정이유 및 참고사항 |
|---|---|--|
| <p>제19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주주 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주주에게 <u>서면으로</u>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p> <p>②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에서 발행하는 ○○일보(신문)와 ○○신문(일보)에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u>서면에</u>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p> <p>③ (삭제 2001.3.2)</p> <p>※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함에 있어 사외이사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그리고 경영참고사항을 통지·공고하거나 비치하여야 하며, 이사선임의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등을 통지·공고하여야 함(증권거래법 제191조의10 제2항 및 제3항).</p> <p><u>< 조 문 신 설 ></u></p> | <p><u>신주인수권부사채 부여 시의 신주인수권 행사 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u></p> <p>제19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주주 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주주에게 <u>서면 또는 전자문서로</u>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p> <p>②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에서 발행하는 ○○일보(신문)와 ○○신문(일보)에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u>제1항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u>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p> <p>③ (현행과 동일)</p> <p>※ (현행과 동일)</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auto; width: fit-content;"> <p style="text-align: center;"><u>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 경우</u></p> </div> <p>제30조의2(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①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증권거래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한다.</p> | <p>- 상법에서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방법으로 서면통지에 추가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조항을 추가함(상법 제363조 제1항).</p> <p>-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대한 근거조문을 신설함.</p> |

상장자료실



| 현행 | 개정 | 개정이유 및 참고사항 |
|--|--|---|
| <p>〈 조 문 신 설 〉</p> <p>제34조의2(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p> | <p>②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p> <p>※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회사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 제3항 및 제54조의5 제2항에 의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그 밖의 회사에서도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p> <p>이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의 경우 위와 같이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근거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음.</p> <p>※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제33조의2(위원회)에 그 설치근거를 규정하여야 함.</p> <p>제34조의2(집행임원) ①이 회사는 이사회 의 결의로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p> <p>②집행임원은 대표이사(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p> <p>③집행임원의 수, 임기, 직책, 보수 및 선임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 집행임원이라 함은 “등기된 이사가 아니면서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에 준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p> <p>예) 부사장, 전무, 상무, 상무보 등</p> <p>제34조의3(이사의 보고의무) ①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②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p> | <p>- 현재 등기는 되지 않지만 사실상 의 이로서 운영되고 있는 집행임원제도를 정관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p> <p>- 2001년 개정된 상법에서 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동 내용을 반영함 (상법 제393조 제4항)</p> |

| 현 행 | 개 정 | 개정이유 및 참고사항 |
|--|--|--|
| <p>※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함.</p> <p>제39조의2(위원회) ①이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회 2. …………… 3. …………… 4. …………… <p>※ 최근사업년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 제3항(제54조의5 제3항) 및 제191조의17 제1항에 의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각 위원회는 이사로 구성하여야 하며 그 명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음.</p> <p>예) 1. 경영위원회 2. 보수위원회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4. 감사위원회</p> <p>〈 주 석 신 설 〉</p> | <p>※ (현행과 동일)</p> <p>제39조의2(위원회) ① (현행과 동일)</p> <p>※ (현행과 동일)</p> <p>※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34조의2와 같이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근거규정을 둘 수 있음.</p> | <p>제34조의2(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위원회 설치 근거규정에서 제34조의2를 참고할 수 있도록 주석을 신설함.</p> |
| <p>②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다.</p> <p>③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 <p>② ~ ③ (현행과 동일)</p> | |
| <p>〈 부 칙 신 설 〉</p> |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u></p> <p>이 정관은 200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p> | |

